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
 - 4)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)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「소 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		(단위: 만원)		
		과태료 금액		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1차	2차	3차 이상
		위반	위반	위반
가.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	법 제86조	100	150	200
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	제1항제1호			
나 거부한 경우				
나.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	법 제86조	100	150	200
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	제1항제2호	100	100	200
수	'			
다.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	법 제86조	100	150	200
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	제1항제3호			
을 설치한 경우				
라.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	법 제86조			
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	제1항제4호			
경우				
1) 차량·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		100	150	200
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				
2)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		50	75	100
경우				
마.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	법 제86조	20	30	50
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	제2항제1호			
한 경우				
바.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	 법 제86조	10	10	10
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	제3항	10	10	10
한 경우	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		
사. 법 제27조제1항제8호, 제11호 또	법 제86조	10	10	10
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	제3항			
위를 한 경우				
아.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	법 제86조	60	100	200
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	제1항제5호			
한 경우				
자.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	법 제86조제			
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·시	3항	10	10	10
그 세20도세18 수 오리 경조ㆍ시				

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차.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	법 제86조	20	30	50
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	제2항제2호			
량 통행을 한 경우 카.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	법 제86조			
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	제1항제6호			
를 한 경우				
1)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		50	100	150
2)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		60	100	200
타.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	법 제86조	50	100	200
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	제1항			
경우 파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	제6호의2 법 제86조	5	5	5
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	제4항			
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				
한 경우				
하.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	법 제86조	20	30	50
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	제2항제3호			
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		